

김해시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등록 안내문

- ▶ 접수기간 : 수시
- ▶ 접수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팩스접수(055-722-4756) 후 시청으로 확인 전화(055-330-2896)
- ▶ 제출서류 ※ 대리 신청 시 대리자 신분증, 대상자 신분증 모두 제출

구 분	제출서류
기존 1,2급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등록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○ 장애인증명서 (구장애인등급 조회 결과 확인서)○ 장애인등록증(1·2급 복지카드)○ 등록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보행상의 중증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또는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결정통보서 중 1개○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○ 등록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유공자증○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○ 등록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1급 또는 2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5·18민주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5·18민주유공자증○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○ 등록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장기요양인정서(1~5급)○ 신분증○ 등록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일시적 휠체어 이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휠체어 필요 내용 및 이용 제약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○ 신분증
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등록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○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○ 신분증

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문

구 분	교통약자콜택시	바우처택시
이용대상	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(타 시도민 포함) <u>(휠체어,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)</u>	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<u>비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이 가능한 이용자</u> <u>(김해시민 한정)</u>
운행시간	24시간	06시~22시
운행지역	경상남도, 부산광역시 단, 김해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김해시 관내 운행(2024.1.22.부터 적용)	김해시 관내 및 <u>병원목적 창원, 양산, 부산 편도 운행</u>
이용횟수	제한없음	1인, 1일 4회
이용요금	<관내> 1,200원(기본) ~ 2,400원(최대) <관외> 경남 : 시외버스 편도요금 수준 부산 : 2,400원(기본) ~ 10,000원(최대)	<관내> 1회 2,000원 <창원, 양산, 부산> 1회 4,000원
이용한도	제한없음	이용요금 초과분 및 콜비(2,000원) 시 지원 → <u>월150,000원 한도</u>
결제방법	○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	
이용방법	○ 경상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 (1566-4488) * 바우처택시 관외이용 시 콜센터 전화 접수 ○ 스마트폰 어플 (경남특별교통수단)	
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자는 교통약자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○ 교통약자와 보호자가 동반 탑승할 경우, 목적지 외 지역을 경유하거나 보호자만 중도 승·하차할 수 없습니다. ○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, 폭행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에 따른 이용자란 (교통약자콜택시 김해시 관내 운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1급 또는 2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5·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임산부 -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	